

조 정 신 청 서

신 청 인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⟨★★★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임차보증금감액청구

신 청 취 지

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,000,000원을 지급한다.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분 쟁 내 용

- 1. 신청인은 20○○. ○. ○. 피신청인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,000,000원으로 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. 그 뒤 20○○. ○○. ○.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50,000,000원, 임대차기간 20○○. ○○. ○.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재계약을 체결하고,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20,000,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최근 경제불황과 부동산가격의 하락 및 임대료의 하락에 따라 위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금 35,000,000원까지 떨어진 상황입

니다.

그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시세와 같은 금 35,000,000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

3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현재의 임대차보증금과 현 시세와의 차액인 금 15.000.000원을 반환 받고자 조정을 신청합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1. 갑 제2호증주민등록표등본

1. 갑 제3호증 영수증

1. 갑 제4호증 부동산중개업자확인서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신청서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0. 00.

위 신청인 ○○○ (서명 또는 날인)

ㅇㅇ지방법원 귀중

					or.krif	 - = ±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기간	0	○년(☞소멸/	니효일람표 ww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및 상대방	- 수만큼의 부본 제	출	관련법규	민사조정법	

불복절차 · 조정에 및 기간 터 2주

·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 터 2주일 이내(민사조정법 제34조)

▲ 대한번로구조곳단

비 용

- ·조정수수료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
- · 송달료 : ㅇㅇㅇ원(로)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
- 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33690 판결).
- ·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불증액의 특약이 있더라도 그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를 인정하여야 함(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다34061 판결).
- ·민법 제628조에 의하여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에 그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 청구시에 곧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청구는 재판외의청구라도 무방함(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4다1124 판결).

기 타

·전세보증금 증감청구권의 인정은 이미 성립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그 내용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 데다가, 보충적인 법리인 사정변경의 원칙,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칙(信義則)에 터 잡은 것인 만큼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인정될 수 있으므로, 기본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의 요건인 ①계약 당시 그 기초가 되었던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을 것,② 그 사정변경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않았고 예견할 수 없었을 것,③그 사정변경이 당사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,④당초의 계약 내용에 당사자를 구속시키는 것이 신의칙상 현저히 부당할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서, 전세보증금 시세의 증감 정도가 상당한 수준(일반적인 예로서, 당초 약정금액의 20% 이상 증감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음)에 달하고, 나머지 전세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되어야 전세보증금의 증감청구권을 받아들일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,증감의 정도도 시세의 등략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밖에 당사자들의 특수성,계약의 법적 안정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함 (서울지법동부지원 1998. 12. 11. 선고 98가합19149 판결).



※ (1)관할법원(민사조정법 제3조)

- 가.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.
 - 1.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
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- 5. 손해발생지
- 나.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조정신청